

채권 양도(환매) 예정 통지

씨에스씨2412유동화전문 유한회사("양도예정인")는 2024.12.27.자 자산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양수예정인")으로부터 받은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 및 제반 부수 권리 일체를 2025.12.10.일자로 아래 양수예정인에게 재 양도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

* 채권매각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 채권 양도와 관련한 권리의 이전과 함께 양도예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업 감독 규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제7항에 의거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양수예정인에게 이전·제공 할 예정이며, 양수예정인은 같은 법 및 규정에 따라 위 양도예정채권과 관련한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 등록하게 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

또한, 귀하께서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예정인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동법 제35조 제1항 제1호~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채무조정 요청의 절차 및 방법은 본 통지서 [별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본 통지서 도달 후 10 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요청이 없는 경우 아래 표시 채권이 예정대로 양도될 수 있음을 통지합니다.

양도예정인		
매입사	주소	대표자 이사
씨에스씨2412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760, 502호 (도봉동, 한밭법조타워)	심재욱

양수예정인		
매각사	주소	대표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50, 2층, 3층, 5층(남대문로4가, 흥국생명빌딩)	노용훈

■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채무조정 요청권

- (개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신청방법)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명시된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니, 해당 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당사 연락처 (☎ 02-3277-928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채무조정 절차>



※ 당사 대출 외에 타사 대출금에 대해서도 함께 채무조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를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회생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별첨1. 양도예정채권 명세>

* 양도예정채권 명세

(자산화정일 기준 금액)

No.	양수예정인	계약번호	채무자명	생년	성별	양도예정일	원금	기타비용	이자금	합계금	장래이자면제여부	자산화정일
1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	1002082	엄소원	1975	여	2025-12-10	11,448,353	-	818,573	12,266,926	Y	2024-10-31